

토론회 자료집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협의 외주화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 박송희
무대 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

***일시: 2020년 9월 9일(수) 14:00-16:00**

***장소: (온라인 플랫폼) ZOOM 회의실**

***주최: 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박송희님 무대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14:00-16:00
장 소 (온라인) ZOOM 회의실
공 동 주 최 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박송희님 무대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14:00-16:00
장 소 (온라인) ZOOM 회의실
공 동 주 최 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 회 성지수(연출가)

발 제 故박송희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 및 쟁점과 의미
- 임인자(독립기획자)

무대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극장 안전 관리 규정 현황 검토
- 김진이(독립기획자)

문화예술계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문제
- 최 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문 의 safetyofpublictheater@gmail.com
참 가 신 청 <https://forms.gle/tCzr2HZ7ghdbNQwi7>

<토론회 관련 안내>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 박송희 무대 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돌아오는 9월 10일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추락사고(2018.09.06)의 희생자 故 박송희 님의 2주기입니다. 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은 2주기 맞아 박송희 님을 기억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엽니다. 공공극장에서의 안전 사고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문제인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겪는 중대재해이기에, 첫 토론회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추락 사건의 경과와 함께 공연예술인으로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 현재 다양한 공공극장의 대관 내규와 공연법이 보장하는 안전의 범위를 확인해본 후, 중대재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2020년 9월 9일(수) 14:00-16:00

***장소:** (온라인 플랫폼) ZOOM 회의실

***주최:** 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본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Zoom)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ZOOM 접속 주소와 자료집을 토론회 당일 발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ZOOM 최초 이용 시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 참여 신청: <https://forms.gle/tCzr2HZ7ghdbNQwi7>

□ 문의: safetyofpublictheater@gmail.com

자료집 목차

1. 故 박송희님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 및 쟁점

- 발제자: 임인자 독립기획자

/ p.1

2. 무대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극장 안전 관리 규정 현황 검토

- 발제자: 김진이 독립기획자

/ p.18

3. 문화예술계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문제

- 무대예술노동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제안

- 발제자: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p.25

[발제문 1]

故 박송희님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 및 쟁점

임인자 독립기획자

1. 사건의 개요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일환으로 김천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호남오페라단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동주관하여 창작극 '달하, 비취시오라' 공연이 2018년 9월 7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2018년 9월 7일 공연예정인 '달하, 비취시오라'의 공연을 위한 셋업 작업이 9월 5일부터 진행되었는데, 호남오페라단 '달하, 비취시오라'의 조연출로 참여한 피해자 고 박송희님은 무대감독의 요청에 의해¹⁾ 9월 6일 오후 1시 10분 경 김천시문화예술회관 3층 대공연장에서 무대 위에 있는 세트를 붓으로 색칠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호남오페라단 무대감독 홍OO는 무대 아래에 있는 세트 및 무대장비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에게 무대 중간 바닥에 설치된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송OO 무대감독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기계감독 임OO에게 기계실로 가서 버튼을 이용해 리프트를 조작하여 무대 아래로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2018년 9월 6일 13:18경 무대 개구부 주변에서 피해자가 무대 세트 색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홍OO 무대감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계속

1) 호남오페라단이 가지고 온 무대 세트를 쓸 수 없다고 송OO 무대감독이 수정 요청을 하여, 본래 예정에 없었던 무대 세트 수정작업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본래 무대 담당이 아닌 조연출이 무대 세트 수정을 위해 색칠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작업하도록 내버려 둔 채 무대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송OO 무대감독에게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송OO 무대감독은 피해자 박송희님에게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은 상태로 무전으로 기계실에 있던 임OO 기계감독에게 “(리프트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임OO이 리프트를 조작하여 6.5m 아래로 내림으로써 무대 바닥면에 78m²(가로 13m, 세로 6m)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 박송희님이 색칠 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위 개구부로 빠져 6.5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락으로 결국 박송희님은 대구에 있는 OOOOO병원에서 2018년 9월 10일 오후 3시경 사망하게 되었다.

2.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1)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 호남오페라단 흥OO 무대감독의 업무상 과실치사

- 호남오페라단 흥OO 무대감독은 리프트 하강 요청 시 무대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대 위에서 무대세트 색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작업을 중단시키고 무대 위에서 내려갈 것을 지시하거나, 또한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경보를 울려 리프트 하강으로 인해 생긴 개구부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다음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에게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그를 행하지 않았다.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은 무대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구부 형성 지점 주변에 사람이 없게 하거나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비상경보 및 램프를 작동시키는 등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 다음 기계감독 임OO에게 하강 버튼 조작 요청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행하지 않았다.
- 게다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은 며칠 전 이미 리프트 하강 시 작동하는 비상경보 및 램프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2018년 9월 6일 무대 개구부 주변에서 피해자 박송희님이 무대세트 색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둔 채 안전 난간 등 설치도 없이 리프트를 내렸다.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만 하였을 뿐 작업을 중지시킨 후 무대 아래로 내려가게 하거나 무대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이 안전교육 완료 서류 조작 지시

- 박송희님이 무대로 추락한 이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며, 남은 인원들을 모아 안전 교육을 시행했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호남오페라단 소속 무대 크루로 참여했던 인원이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밝혀졌다.
- 또한 이는 최초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당시 “안전 교육”을 이유로 김천시를 불기소 처분한 바 명백히 증거조작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해 다시 재기소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3) 안전 조치 이행이나 비용 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 공연은 “전부 도급”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위험의 외주화”

- 1심 형사 재판부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3층 높이의 대공연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를 호남오페라단의 흥OO 무대감독이 요청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 형사 <판결문>의 주석을 통해, 호남 오페라단뿐만 아니라 극장도 의무가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공연만을 놓고 본다면, 안전조치 이행이나 비용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계약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다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위험방지 등 안전조치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김천시도 엄연히 이 사건 극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그 사업은 이 사건 공연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 이홀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꼭 이 사건 공연 때문이 아니더라도, 김천시에는 이 사건 극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1심 판결문 중 10P 주석 2)

- 또한 1심 형사 재판부는 소결론을 통해 호남오페라단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연 준비과정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였으므로 안전조치

를 할 의무가 있었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주석을 통해 김천시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한편, 김천시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판단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그 이유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변론 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 참고삼아 살펴보았다.

김천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는 “김천시가 피고인 법인에 사업의 ‘전부’를 도급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 준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위 처분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배경이 된 사안, 즉 사업의 ‘전부’를 도급으로 하였다고 본 사안(2008도7030)은, 전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원만을 배치하였을 뿐,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구체적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사안(2018도7650)도, 영업팀 직원 1명이 1주일에 한 번씩 공사현장에 가서 현장상황 보고를 받고 확인하는 데 그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정서를 살펴보면, 김천시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지고 극단 측과 협의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조명, 음향, 분장실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연 사업이 단순히 공연장에서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기획, 홍보, 공연자 준비 등이 모두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즉, 김천시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여러 구성요소 또는 진행 단계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일부는 극단에 맡긴 것이다. 그리고 김천시 소속 근로자인 송OO은 극단 측과의 스텝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극단 측에서 요청하는 특정 무대세트의 무대 반입을 안정상의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였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구부 주위에 사람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송OO이었다. (가만 개구부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김천시 소속 근로자인 임OO도 기계실에서 리프트 등 기계를 조작하였다. 즉 김천시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에 머무르며 공연 준비 업무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였다. 특히 송OO의 경우, 극단 측 관계자들이 ‘갑’의 지위에 있거나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심 판결문 중 11P 주석 3)

이렇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주석에까지 개제한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김천시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매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와 문제점

(1) 도급인(김천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게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주장과 그 오류 : 공연은 공연장의 ‘협조’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검찰은 “호남오페라단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김천시가 호남오페라단에 공연초청료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약정서에 따르면 호남오페라단이 공연의 제작, 진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연초청료로 공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하고,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지며 공연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본시설(조명, 음향, 분장실 등)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실, 본 건 공연 개최계획서 및 포스터에 공연 주관기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호남오페라단으로, 공연 장소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호남오페라단 단장 조OO 및 연출가 김OO이 공연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호남오페라단 소속 무대감독 홍OO가 무대설치를 총괄하여 진행한 사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는 호남오페라단에 무대시설을 제공하면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소속 공무원인 무대감독 송OO이 호남오페라단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무대 중앙 바닥면 상승·하강 기계장치) 작동 등을 지원하면서 호남오페라단의 무대설치 작업에 함께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도 7030호 판결 등 참조), 법령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도 7650호 판결 등 참조)”고 하며, <약정서>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남오페라단 공연의 제작, 진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연초청료로 공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한다는 것을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아무런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단하였다.

- 검찰은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는데, 공연장에 들어간 공연 단체가 제작, 진행에 관한 업무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공연장의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공연을 이루는 콘텐츠로서의 공연물과 그 공연이 가능토록 하는 물적 조건인 공연장의 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연장의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은 공연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연단체에 전가할 수 없다.
- 또한 검찰은 본 사업의 주최이며,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김천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고, 공연법 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조적인 것으로 명시하여, 공연장에서 극단과 공연장 관리감독 간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 그리고 심지어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도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받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그와 같은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도급사업주의 근로자 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경지지원 2016고단549호 판결, 대법원 2018도7650호 판결로 확정됨)” 라는 판례를 들면서, 다시 한번 공연 ‘달하, 비취시오라’는 호남오페라단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지는 공연이라고 언급하여 공연장의 관리·감독 없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연의 속성을 외면하였고, 검찰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OO 무대감독은 무대설비 제공의 일환으로 ‘협조차원에서’ 무대시설물 설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²⁾, 김천시문예예술회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호남오페라단에 모두 전가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검찰은 “호남오페라단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거나, 공연 준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김천시(김천시문화예술회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과 호남오페라단이 공동주관하는 공연에서 공연을 진행함에도 공연을 셋업하고 진행하는 것을 “협조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천시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 안전교육을 하였다는 조작된 서류(증거조작)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불충분

-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김천시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채 안전교육은 5분간 실시되었다. 과연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후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故 박송희님의 추락사고 이후 송 OO 무대감독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문서에 서명토록 조작하였다. “안전교육” 실행이 불기소처분의 사유였다면, 모두가 참여하지 않은 5분간의 형식적인 교육에 더해 서류까지 조작하여 중대한 증거 조작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검찰은 재기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 사고 직후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시설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사람에 대한 안전 책임자의 부재

- <공연법> 상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관리계장의 인사이동(2018.7.13.) 이후 바로 후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당연 승계로 지정하여야 하나, 사고발생 직후인 2018년 9월 7일에야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 담당자에 대해 불기소 사유로 들었으나, 안전총괄책임자의 지연을 지연하고, 공연이 올라갈 예정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 또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안전총괄책임자가 기계, 가스, 소방, 전기, 승강기, 건축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계의 관리계장의 업무로 배정을 해두었고, 무대를 운용했던 무대감독 및 기계감독은 관리계가 아닌 운영계 소속으로 그 책임이 이원화 되어 있어, 총괄적인 안전책임자가 부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 그러나, 2020년 9월 현재에도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조직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연자의 안전과 직결한 부분에서 안전관리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심지어 000 무대감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직



[출처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s://gc.go.kr/>]

3. 故 박송희님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또한 아직도 고 박송희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천시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8년 ‘달하, 비취오시라’의 공연은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 계약, 안전교육, 보험 등의 모든 안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김천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와

호남오페라단이 공동주관하면서 이른바 공공기관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이 모든 기관은 모든 책임을 공연단체에 맡긴 채, 연습, 셋업,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아무런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 박송희님은 구두로 계약했을 뿐,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못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고 박송희님은 자신이 맡은 조연출이라는 역할이 아닌 업무를 종용받아 결국 무대 셋트를 수정하는 페인트칠을 하게 되었고, 무대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 박송희님의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살피지 않았다.

고 박송희님은 조연출로서 또한 단기 비정규직 스태프로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아무의 주의를 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실족”이라든지, “경력미숙”이라든지 하는 이유를 들어 희생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적외선 CCTV의 밝기를 들어 그 당시 무대 위는 밝아 고 박송희님이 리프트 하강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대 위는 “밝기와 상관없이” 밝은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안전펜스와 경고등과 경고음이 울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공모 요강에 보이는 몇 가지 사안은 2018년 이후 조금은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이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책임이기도 하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된 보험을 필수 가입토록 하였으며, 셋업, 리허설, 공연 등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대비를 위해 현장 환경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김천시를 불기소한 입장처럼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리·감독의 책임을 공연단체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안전한 창작환경의 조건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 박송희님이 사망한 지 2주기가 되었다. 박송희님의 사망이 ‘사고’가 아닌 ‘사건’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김천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다. 또한 지금이라도 검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주시기를 촉구한다. 공연장은 공연자에게 “협조”하는 수동적인 위치나 장소가 아닌 안전을 관리·감독하여 예술가에게는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공공극장의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약관화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해 예술가들의 모든 행위에서 공연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기관으로 귀결되어 버렸다. 이에 대한 재조사가 중요하다. 예술가는 공연장 없이, 공연장은 예술가 없이 공연을 할 수 없다.

.....

[별첨]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 올라온 고 박송희님 관련 자유게시판 게시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9-09-10 김OO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故 박송희 양의 1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제와 다르지 않을 오늘이겠지만,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법정에서도 무죄와 무혐의를 주장하셨다죠? 정말 치사하고 잔인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군요. 끝까지 사과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 말할 줄 모르고, 잘못했다 말할 줄 모르는 당신들이 참 불쌍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덮을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2018-10-10 김OO “김천문화예술회관 추락사고”

Cctv가 공개되기 전 까지 사망한 피해자에게 모든 사고 원인을 지우고 극단이나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공개되니 그제서야 극단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김천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 기관인데,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애쓰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엾은 젊은 학생의 죽음을 모른척하고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으려하다니 너무나 실망스럽고 슬프네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진심으로 바라고, 훗날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귀 기관측에서의 철저한 검사와 운영을 바랍니다.

2018-10-06 이OO “김천문화예술회관 사고 관련 대책”

김천문화예술회관 및 책임자는 조속히 이 사고를 덮을 것이 아니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메뉴얼에 따른 안전사항이 더욱 준수되어 강화되길 바랍니다. 메뉴얼상 리프트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야하지만 이때 잘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산 사람도 살아야지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유가족분들과 후대에 예술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18-10-05 김OO “관리자는 보십시오”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무대의 경우 주변에 경고등·펜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무대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주관한 쪽에서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왜 그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한 후 개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신 것 아닌가요? 추락방지 시설 설치(안전장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안전교육, 개선방법(대책)을 요구합니다.

2018-10-02 신OO “문화예술이 이런겁니까?”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께서 어딜 문화와 예술을 들먹이고 계십니까 예술이라는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행사의 안전도 그렇게 얽매지 않은 겁니까? 남의 목숨에도 얽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 이익에는 얽매이고 있습니까?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한 댓가와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벌을 줄이기 위한 발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그 값을 달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행사라면 행사의 안전도 당신들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야 합니다.

2018-09-29 장OO “진실을 말할 기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분들께서도 마음은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가 있을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당신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십시오.

2018-09-29 김OO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사고에 대한 책임감있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무대 사고로 인하여 꿈을 향해 달려가던 조연출 친구가 추락사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커녕 회피와 거짓으로만 대응하심에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잊혀지지도 묻혀지지도 않을 일입니다. 사고에 대한 성숙한 모습과 책임,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솔하고 진실된 사과 부탁드립니다.

2018-09-28 박OO “사고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세요”

9월 7일 공연예정이었던 오페라가 하루 전 날 조연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김천시청 소속 무대감독이 승강 무대를 지하로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안전조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공연이 취소된 것을 내부사정이라고 공지해 놓은 것이 전부네요. 귀한 생명이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사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2018-09-28 김OO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추락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숙 예술회관 관장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꿈 많은 친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가장 먼저 사고발생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 유가족에게 보였던 김천시와 예술회관의 책임회피 태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대에 올라갔으며, 혼자 사고가 났고 목격자가 없다.\\\'' 김천시 소속 관계자의 대답이었지요. 저도 무대를 보지도 않고 작업을 지시하는 무대감독, 사고 후 \\\'우린 책임이 없다.\\\'' 라는 김천시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상처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회관을\\\''관장\\\''하는 김금숙 관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고, 유가족에게 진실된 사과, 하시길 바랍니다.

2018-09-28 이OO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조연출 추락사 관련 책임있는 행동 요구합니다.”

이번 일에 관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어설피게 무마하려 하거나 적당히 꼬리만 자르고 말거나 하염없이 시간 끌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당한 가족이 적어도 가족을 잃은 슬픔 이외의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2018-09-28 손OO “김천문화회관의 책임규명을 요구합니다”

고인의 일의 지시자이자 극장의 책임자인 무대감독 그리고 그 무대감독을 고용한 김천예술회관 최소한의 안전수칙, 무대옆에도 바로 붙어있던 그 기본중의 기본 더 안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무대감독인지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고인이 숨이 붙어있던 4일간 사과는 커녕 찾아오지도 않다가 생을 거두고 나서야 장례식장에 찾아올수있나요? 김천예술회관측에선 유가족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셨나요? 그래놓고 몇일뒤에 김천예술회관 대극장 그 사고현장에서는 고인의 선배님들이신 성악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주회를 하셨더라고요 대관료... 받으셔야했겠지요 사람의 죽음과 생명앞에서 본인들의 이득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 죄책감은 없으십니까? 발뺌하고 잠이오시나요? 고인의 지인들인 무대서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추락하는 꿈을 그날이후 종종 꾸다고합니다 유가족들과 지인들 음악계 공연계에서는 크게 분노하였는데 이 사고의 진행자이자 시발점인 김천시와 김천예술회관, 그리고 무대감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너무나 기초적인것, 윤리적인것이 안 지켜지는 곳에서는 아무도 공연하길 원치않을겁니다 앞으로 최악의 명성을 떨치길 바라겠습니다.

2018-09-28 황OO “노래를 사랑했고 무대를 사랑했던 아이가 무대에서 사망했습니다.”

노래를 사랑했고 무대를 사랑했던 아이가 무대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던 친구, 자신의 꿈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떠난 친구의 사고에는 아무도 책임이 없나봅니다. 극장구조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무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일을 했겠죠.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마인드였겠죠, 몇 년 전부터 혹은 몇 십 년 전부터 잘못되었던 겁니다. 아름다웠던 꽃이 졌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2018-09-27 박OO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수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구조물 설치 등의 수칙을 잘지켰더라면.. 누군가 리프트가 내려간것을 알려줬더라면.. 돌릴수없는 시간이 가슴아파 이런저런가정을 해보지만 이미늦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의 결과로 한 젊고 깨끗한 생명이 스러졌습니다.

니다. 그사실만으로도 너무속상하고 화가나는데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상황들이, 수사가 진척될수록 알려지는 진실들이 남은이들을 더 화나게만듭니다. 더이상의 회피는 안됩니다. 부디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땅에 이런 가슴 아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도 세워지길 바랍니다.

2018-09-27 김OO “\\\'달하비취오라\\\'공연 취소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당일 하루 전날 갑작스러운 공지로 \\\'내부사정\\\'에 의한 공연취소 라는 말이 정당화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끔찍한 사고로 인해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대 시설 안전설계지침에 따라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무대의 경우 주변에 경고등·펜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사를 읽어보니 CCTV확인결과 당시 무대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리프트 주변에 두 명의 보조 스텝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조심해야한다.\\\'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무대 상황에 대한 인지가 아무도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이야말로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문화회관측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천문화회관측에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달하비취오라\\\'공연 취소의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그 곳에서 일어난-일어나지 않았어야하는- 끔찍한 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해주십시오. 흘러가기 식의 회피와 무응답은 이번 사고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김천문화회관측의 성숙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억울한 죽음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2018-09-27 조OO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우리는 다 알고있습니다. 진상규명하세요”

추락할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으며, 리프트 내리니까 내려오라 말했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추락할당시. 아니, 뒷걸음치는 동안에도 경호원들은 리프트 내려가는걸 구경만 하고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리프트 구경하라고 세워놨답니까? 뒷걸음치는동안 누구한명이라도 큰소리 한번 쳐줬으면....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옆에있던 경호원들도 무대감독이랑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무대서는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리프트 내리는동안 무대위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 절대 안된다는사실어요. 물론 그 리프트를 내릴수있는 단 한사람, 김천시 무대감독도 잘알겠쥬. 아주 잘. 회피 그만 하시고 진상규명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있습니다.

2018-09-26 성OO “이번 조연출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성어린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고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사랑하는 동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사고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자측 및 김천시 문화회관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유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또한 일부 관계자분의 \\\'자신의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덮어두자\\\'는, 또 그에 준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진정으로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무엇인지 알게되었고, 그에 따른 분노 역

시 감출수가 없습니다. 작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감독은 높이 7미터의 리프트를 무대 아래로 하강시켰으나, 해당 회관의 작업시 주의사항에 명시되어있는 리프트 주위 인물들에 대한 경고 및 안전 펜스 설치 등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분들께서는 누군가의 지시없이 조연출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한 젊은 성악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건에 대한 조작 및 은폐시도로 유가족 및 주변인들, 그리고 해당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업계에 대한 불신과 안타까움, 실망감, 슬픔 그리고 분노라는 이름의 이 세상 누구라도 생각하기 싫고 받고싶지 않은 경험과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관계자분들 역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세상이 홀로 설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시라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고 떠난 정말로 사랑스러웠던 한 아이의 명예를 똑바로 세워주시고, 귀한 열매를 잃은 부모님과 동생 및 가족의 마음 위로할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사과 및 사건에 대한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공간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글이 전혀 아니며, 해당 게시판에 대한 삭제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글임을 밝힙니다.

2018-09-26 고OO 진상규명을 조속히 진행할것을 촉구합니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달하, 비취시오라>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공지사항에는 내부 문제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김천시에서 관리해야할 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그리고 무대감독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조연출로 아르바이트를 한 박모양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목숨을 잃게되었으니 내부사정이죠. 그러면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김천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책임을 지고 조속히 움직여서 무대 감독에 대한 징계와 시와 예술회관측에서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식적이고 정확한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과 사과문등을 발표하여, 단순히 내부사정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진짜 김천시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내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일의 진상이 드러나고 책임 및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유족들이 마음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활동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진행할것을 촉구합니다!!

2018-09-26 김OO “진상규명 바랍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연출 사망 사고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CCTV 확인 결과 무대감독 등 회관 당사자들이 사건 당시 무대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직후 무대감독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잡아떼기 바빴다구요? 나중에야 사실이 밝혀지니 유가족에게 찾아와서는 자신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 용서해달라는 식의 망언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사망 직후에 말입니다. 퇴직금.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찾아와서는 겨우 한다는 말이 퇴직금 타령이라니. 처음에는 사실 은폐를 시도하고, 드러났지만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자기 퇴직금과 노후는 걱정하는 양반이, 다른 사람 생명 귀한 줄은 왜 모르실까요? 당신의 가족이 똑같은 사고

를 당했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비단 직원 한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굽은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다들 자기 책임 아니라고 회피하기 급급해 보입니다. 공지사항에는 해당 공연이 \\\"공연장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나와있군요. http://www.gcart.go.kr/ArtCenter/page.htm?md=4&mnu_uid=2244&msg_no=120699&v_no=266&pageno=1&msg_ca_no=0&wztp= 시에서도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가려지는지. 아시다시피 여러 매체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이, 어떻게든 덮고 피해가려 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그걸 돕고있는 당신들. 하늘이 두려운 줄 아십시오.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은폐하려 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만큼 법적인 책임을 지십시오. 최소한 자기 양심은 지킬 줄 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18-09-25 위OO

“누군가는 이 글과 여기 올라온 글들을 보고 하루 빨리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한 소녀가 꿈을 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라는 말 외에는 사건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더군요. 정말로 책임이 없습니까?? 공연법 제 11조1항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대책계획서는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다면 사고 직후 매뉴얼대로 대응하였습니까? 공연법 상 공연장 운영자는 실내,외 혹은 객석 규모 별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됩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900석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습니까? 안전교육은 수립된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해야됩니다. 했다면 어떤 안전교육을 했습니까?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법률 대로 지켰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자책이든 비난이든 도덕상의 제재를 받아들이세요. 책임을 회피하면 뭐가 남습니까? 돈??? 명예??? 아니면 안도감??? 입장 바뀌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누군가의 부주의와 실수로 먼저 가버렸다면, 근데 실수한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떨 거 같으세요?

2018-09-25 흥OO

“얼마전에 있었던 공연 준비 중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있었던 달하 비취시오라 공연 준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중이던 조연출이 무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두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공연

준비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주최한 측과 주관한 측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공방전을 하고 있다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무대를 주최한 측과 주관한 측에서 공연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모른척한다면 대체 누가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만해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것만해도 너무나 속상한 일인데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신다면 더이상 책임을 전가하지않고 책임 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09-25 변OO “얼마전 사고에 대한 책임전가”

얼마전 이 곳 대공연장에서 조연출이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책임 전가 하기에만 급급하시죠? 한 사람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된 것을 떠나 김천문화예술회관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예술회관측에 잘못이 없을 수 있나요? 이렇게 부실한 무대와 안전의식이 전혀 없는 이 곳에서 앞으로도 다른 공연들을 올릴 생각이신가요? 이번일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고,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제대로 책임지세요

2018-09-25 조OO “김천시 문화회관 책임전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였더라도 그렇게 책임전가하겠습니까 ? 이미 일어난 일이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된 사실과 태도로 , 묻으려고 하지말고 이번 사건을 대해주시시오

2018-09-11 이OO “무대스텝이 무대제작중 사망하였습니다.”

실족!!!!!!! 이라고 표현한 어린 성악도가 세상을 달리 했다. 하루종일 관련 기사를 찾아봤지만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찾을수없었다. 무대안전교육은? 무대안전바는 제대로 설치되었었는지? 싸이렌은 있었는지? 무대감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행대행단체는? 주최주관단체는? 아무도 아무런 책임없이..... 이대로 실족사가 되는 것인가!!!!

<http://mnews.imaail.com/Society/2018090618144097408>

무대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극장 안전 관리 규정 현황 검토

김진이 독립기획자

1. 들어가며

‘故박송희 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2018.09.06.)가 어느덧 2주기를 맞고 있다. 사고 이후 청와대 청원(2018.09.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1심 판결(2020.01.08.), 서울남부지청 민사1심 판결(2020.04.21.) 등이 진행되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가 드러났다. ‘故박송희 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에서 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부재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리프트를 통해 무대장치를 반입하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구조에도 사건 당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의무 조치(리프트 주변 안내 펜스 설치, 리프트 작동 안내 경광등 및 경광음 작동 등)가 실행되지 않았다. 리프트 하강 안내 및 작업 중지 고지 역시 없었다. 심지어 사전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는 허위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납득되지 않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이 김천시를 불기소 처분(2019.06.26.)한 이유이다. 검찰은 김천시를 불기소 처분하며, 김천시가 공연단체에 “공연 준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다”라고 밝힌다. 그 결과, 극장의 운영 주체이자 이 공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주최한 김천시(김천시문화예술회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책임을 면제받았다. 검찰의 김천시 불기소 처분 논리를 따르다면, 무대의 안전 책임은 오직 공연단체에게 있으며 극장의 책임은 극장 무대감독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된다. 두 번째는 서울남부지청 민사재판 1심 판결(2020.04.21.)이 ‘일반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했던 것이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일상공간과 구별되는 극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극장에서 예술가/노동자의 주의 의무, 안전 보호와 관리는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특정한 예술가 개인에게 일어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고로 보기는 어렵울 것이다. 이 글은 주요 공공극장의 안전 관리 규정 현황을 살펴보고, '故박송희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가 벌어진 환경과 조건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고는 예술가의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자성, 극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안전과 책임 등 복합적인 맥락과 함의가 담겨져 있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주요 공공극장 안전 관리 규정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극장 안전 관련 공연장 안전 실태 조사 및 공연법³⁾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공연법에는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에 재해예방조치, 안전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등 주로 관객이나 공연장 시설 설비를 대상으로 한 안전 지침이며, 극장의 예술가/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 예방 및 안전 보호 조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안전관리비 계상 조치 역시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 해당하고 있어 그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 극장들의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김천시가 운영하는 극장으로, 김천시 조례로 운영 규약이 제정되는 공공극장이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주요 공공극장⁴⁾의 대관 규

3) 현 공연법의 주요 안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 5. 18.>

정 및 안전 수칙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규정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주요 조항들 역시 공연법과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의 대상을 극장의 ‘시설’ 또는 ‘설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안전 ‘관리’를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으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예술가/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 예방 및 안전 보호 관련 조항은 찾기 어려웠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⁵⁾ 조항

(참고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고양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극장	규정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공연 운영 지침	제3조(화재 등의 안전관리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공연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기간 중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무대 안전 수칙(별표 제1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장 및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세종문화회관	대관 규정	제14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가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예술의 전당	대관 규약	제 17조 (시설 사용) ①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전당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없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18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전당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전당에 대하여 이의 수리, 원상회복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전당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

4) 이 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서울문화재단,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고양문화재단,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규정, 대관규칙,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공연장 사용규정, 무대 안전수칙 등을 조사하였다.

5)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한다. (위키백과)

극장	규정	내용
		<p>당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p> <p>③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 또는 공연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전당이 입은 손해 및 전당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손해보상, 기타 책임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대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관자가 진다.</p>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사용 규정	<p>제21조(배상책임) ①재단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p>②사용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p> <p>③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p>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대관 규정	<p>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p> <p>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전당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p> <p>2.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져야한다.</p> <p>3. 전당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전당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p>
고양문화재단 - 고양아람누리	공연장 대관 규약	<p>제5장 사용자의 의무</p> <p>제14조(선량한 사용자의 의무)</p> <p>①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p> <p>②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대관시설에 관하여 주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p> <p>③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 내 타 공연장의 공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p>

반면 안전 관리 규정에서 극장의 책임을 명기한 경우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과 관리 등 일반적인 무대 진행에 관한 책임은 위원회 무대감독에게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극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기한 사례도 있었다. 고양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 극장은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었다. 예술의 전당 대관규약(제 18조 3항),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사용규정(제21조 3항) 등에도 극장의 손해배상에 대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무대진행상의 책임 혹은 손해배상 책임에 극장의 책임을 명기한 경우

(참고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고양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

극장	규정	내용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공연 운영 지침	제2조(공연 준비, 진행 및 협조) ... 3. 공연준비 및 진행 ... 나.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과 관리 등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위원회 무대감독에게 있다. 다.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대관자는 무대 장치 및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 무대기술부의 감독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고양문화재단 - 고양아람누리	공연장 대관 규약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재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대관기간 중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단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재단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연 준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무색하게 하는 규정이다.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속 극장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예회관이다. 게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故박송희 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가 벌어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연의 주최 기관이다. 따라서 극장의 안전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판단할 때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의 규정이 중요한 기준치로 참고되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3. ‘사람’ 중심의 안전 지침, 극장의 ‘책임’ 명기 필요성

극장이라는 공간이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극장이 경우에 따라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재해 시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주요 공공극장의 안전 관리 지침을 검토한 결과, ‘사람’ 중심의 안전 지침은 사실상 간과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故박송희 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이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와 공연단체는 극장 대관신청을 하거나 대관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극장의 안전 관리 규정을 확인하거나 안내받는 절차를 거친다. 발제자는 공공극장의 상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대관 업무를 수행하며 대관 규정을 검토하거나 개정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안전이라는 관점’ 아래 그간 대관 규정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공공극장에서는 효율적인 대관 업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유에서 대관 규정을 개정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들은 사용자의 안전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연법 개정에 따라 공공극장에서는 공연 전 안전교육을 1시간 시행하거나 예술가들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 교육을 이수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극장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고 엄격해질수록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책임비용은 결국 예술가와 공연단체의 부담으로 비대해지거나 개별화되는 것을 종종 확인하곤 했다. 대관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간에 공연을 수행해야하는 예술가와 공연단체에게 안전한 작업 기간을 확보하거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절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안전 관리 책임의 개별화는 예술가들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과 공연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극장 상주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극장 상주 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의무가 있으면서도, 상시적으로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故박송희 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에서 책임의 총괄인 김천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속 공무원인 무대감독 개인에게만 부과되었다. 김천시를 비롯하여 사업의 주최, 주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없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지속해가며 후속 조치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장의 상주 노동자는 안전 관리에 있어 더욱 소극적인 입장이 되며, 공연단체에게 사용의 제한이나 불가, 귀책사유를 통보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책임이 개별화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故박송희 님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 이후 극장이 예술작품의 발표공간이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 벌어진 환경과 조건들 중 하나가 공공극장의 안전 관리 지침의 범위와 책임에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극장의 안전 관리 지침에는 최소한 다음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안전 관리 대상 및 범위 변경

- 극장의 안전 책임 명기: 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과 관리 등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극장의 책임
- 무대 작업자의 안전보건 조치와 의무: 무대설치, 준비, 공연 등 제반 작업 및 활동 전반
- 안전 규정 안내 및 교육: 계약 체결, 극장 출입, 작업/공연 진행 각 단계별 안내 및 교육

이를 위해 관련 당국에 대관 계약 관계 및 안전 책임·의무 규정을 재구성하는 ‘공극장 표준 안전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안전 관리 지침은 하달식 문서가 아니라 예술가와 극장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약속하는 합의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문제 - 무대예술노동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제안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 들어가며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작업 중 공연단체의 조연출故박송희 님이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공간의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준비되던 공연이었다⁶⁾.

안전 펜스나 리프트 하강 시 작동되었어야 할 경광등만 작동되었어도, 리프트 하강 작업과 도색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않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하지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자 외에 공연을 기획하거나, 공연장을 운영했던 어떤 기관이나 기관장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극계, 무대예술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000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죽고,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모두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 한국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한국 사회 노동안전보건 문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어떻게 내팽개쳐졌나

1) 위험의 외주화

6) 2020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주최/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주최, 주관 단위가 바뀌었음.

故박송희 님이 준비하던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 주최,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공연의 직접적인 주체는 호남오페라단이었고, 故박송희 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호남오페라단을 통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다.

위험의 외주화는 꼭 어렵고, 위험한 일을 밖으로 떠넘긴다는 의미만 갖지 않는다. 같은 일이라도, 외주화함으로써 위험이 증폭된다는 의미도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안전관리 의무를 ‘안전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것이 된다. 원·하청으로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명의 사업주가 개입하게 되고, 이윤추구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비용은 더욱 줄어들고 위험은 증폭된다.

또, 연구자들은, 외주화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 계획이나, 작업 방식 등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법률적으로 안전 책임을 지게 되는 하청이 구분되면서, 효과적인 안전 조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든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원청의 법률적 책임이 적으면, 더욱 위험이 커지게 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 혹은 협상력이 높고, 노동자 참여가 커질수록 안전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복잡한 원하청 관계에서는 이런 기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외주화의 아래 단계에서는 일용직·기간제·특수고용직같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쉽다. 하청 회사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하청 업체 자체의 계약 안정성에 고용이 종속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은 불안해진다. 이런 경우, 노조가 없고 노동자의 협상력은 낮아지는 등, 노사관계가 불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동자 측의 제어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김용균 님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원-하청으로 이어지는 이중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무비가 착복되고,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하청 노조가 있었고, 여기서 안전상의 문제를 수십번 건의했지만 하청회사에는 안전조치를 위해 설비를 변경, 조정할 권한이 없었고, 원청 업체에는 하청 노조와 협상할 의무가 없었다.

故박송희 님의 경우도, 리프트 하강 작업 시 설치돼야 할 안전 펜스가 없었던 것이나 리프트 하강 시 작동되었어야 할 경광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다른 대체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연을 하러 들어간 팀의 책임이라기보다 공연을 유치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과 김천시의 책임이다.

2) 미숙한 노동자의 잘못?

무대에서 사고가 나면, ‘개가 잘 몰라서’, ‘일 처음 해봐서’, ‘미숙한 노동자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역시 문화예술계만의 반응은 아니다. 어느 산업 현장에서나, 사고가 나면 흔히 들리는 말이다.

‘미숙한 노동자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은, 일면 맞기도 하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지 6개월 이내의 노동자가 사고가 많이 난다. 2018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971명 가운데,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593명으로 61%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일용직인 건설업 사망자를 빼면, 비율은 조금 줄어든다. 건설업 제외한 사고사망자 486 명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177명으로, 36%를 차지한다⁷⁾. 그래도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기가 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계나 설비, 작업 방식, 안전한 작업 관행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고용 불안정은 근속기간 6개월 이내의 ‘미숙한’ 노동자를 양산한다. 예전에는 근속기간이 짧은 ‘미숙한’ 노동자가 주로 청년 노동자들이었다면, 고용 안정은 옛말이 되어 버린 지금은, 중장년, 노년 노동자 역시 6개월~1년 짜리 계약을 갱신하는 일이 많아졌다. 2019년 한 조사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경비직 총 근속 기간은 5.5년이지만, 현재 아파트 근속은 2.9년이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해도, 직장을 옮겨가면서 일한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이 미숙한 노동자를 만들고, 일터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이 이렇다면, 매번 새로운 극장에서 일하는 무대예술인들은 어떨까? 매번 미숙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무대예술인 뿐 아니라, 많은 방송, 영화, 건설 등 프로젝트 성 노동자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작업 공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노동자만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속기간이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은 것은 노동자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의 노동자가 더 위험하거나 취약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주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7) 2019년 근속기간별 사망사고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더 위험한 작업이라면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의 경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공연장의 경우, 안전관리나 감독, 새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연장과 문화예술계는 산업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3) 사고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간다. 원청에서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소속 공무원 무대감독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천시(김천시문화예술회관)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무대 개구부 안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위험이 생길 경우 그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특정한 개인이 아닐 때가 많다.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나 중간 책임자들은 기업의 조직문화로 형성된 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직접적인 책임 소재 색출을 넘어 기업의 정책, 행동규칙, 관행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독립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런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김천시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가 먼저 나서 김천시의 책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천시의 책임은 법적 판단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사건에서 김천시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지고 극단 측과 협의해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조명, 음향, 분장실 등 기본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천시에는 극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언급은 故김용균님의 사망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최근 노동안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고무적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천시를 기소하지 않아, 김천시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 역시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를 얼마나 가볍이 여기고 있는지, 제대로 된 책임 소재 찾기를 게을리 하는지를 보여준다.

2020년 8월 3일, 故김용균님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들이 드디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는 원하청 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이를 뒤집어 두 사업주 모두 기소하였다. 재판을 지켜봐야 하지만, 세상이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다.

3. 제언

이렇게 이번 사고는 문화예술계의 독특한 문제라기보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안전을 여전히 비용으로 보는 태도,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문제로만 여기는 태도, 법적 미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복잡한 계약 관계, 불안정한 고용, 노동자(일하는 사람들)의 낮은 협상력 등의 무대 예술 노동자의 취약성과 만나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문화예술계 측면의 과제뿐 아니라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공연예술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직 한국사회의 노동안전 패러다임은 ‘산업안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규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사회의 주요 업종의 안전 문제를 줄 규율하고 있고, 여기서 주된 관심사는 추락, 전도, 낙하, 충돌 등의 재래형 사고 예방이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 ‘사고 예방과 보상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에 관심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자’ 이외의 ‘일하는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욕구는 무시되기 쉽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런 틀을 대표하는 법체계이며, 여기서 기존의 근로계약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 온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되거나 취약해지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도 규율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특정 업체나 극장에 고용돼 있지 않고, 프로젝트 별로 계약을 맺어 작업한다. 심지어는 故박송희님처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조항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만을 규율한다. 상시근로자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공연장은 여기서 벗어난다. 예를 들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연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 기간 동안에는 50명 넘는 사람들이 해당 공연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사각지대 때문에, 많은 공연장들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니, 안전관리나 감독, 새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상시적인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존하는 법과 제도의 규율도 받지 못한다.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조치들도 공연장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주기는 1년이다. 하지만 매번 공연마다 서로 다른 위험이 발생하는 공연장의 경우, 간략한 형태로라도 위험성 평가가 공연 시작 때마다, 공연장 책임자와 공연팀 안전 책임자, 실제 관련 업무를 맡은 노동자(예술인)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노동자 권리인 작업중지권, 참여할 권리(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를 문화예술계에서 어떻게 실제 기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은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법적 권리 자체가 소개도 되지 못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알고, 익히고, 자신들의 일에 적합한 형태로 요구하도록 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상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에 달라지는 산업과 고용 형태를 반영하여, 더 많은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2) 문화예술인 산재 보험 보장 현실화를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말할 것도 없다. 일하다 다친 것이 분명함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산재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하거나, 개인이나 예술팀에서 가입한 민간 보험에 기대어 해결한다.

2012년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실효는 없다. 2017년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664명으로, 2012년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도입 당시 예상했던 가입 인원 5만 7700여명의 1%에 불과하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기도 한다. 故박송희 님 사고 이후에도 꼬리자르기 식으로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로서의 보상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20년에도 광주시립극단의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배우들이 안전사고와 부상을 당했다. 사고 발생 뒤에야, 이 노동자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재 보험과 예술인 복지법 상의 지원 제도도 있지만, ‘시립극단’에서도 활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런 법, 제도적 사각지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연극이나 오페라 등 무대예술뿐 아니라, 방송제작 현장 등 작업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결성되고 표준계약서가 안착되기 전 영화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이 역시 문화예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 가입이 되는 업종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 대리운전 노동자는 2016년부터 법의 적용 대상이 됐지만,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노동자 중 산재 보험 가입자는 4명 뿐이다. 산재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종사자 전체를 봐도 20%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만 가입돼 있다.

면피용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왜 낮은지 제대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대도 열렸다고 하는데, 고용보험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기본적인 산재 보험의 보장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공연법’ 개정

현재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 운영> 등에 재해예방조치, 안전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책임이 있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연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재해 예방 및 대처가 명확하게 포함되지는 않는다. 공연장 자체의 화재나 전기 등 사고와 관련된 책임으로 임하기 쉽다. 공연장에서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아니더라도)을 포함한 공연장 내외의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연법 제11조의2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다. 안전관리비는 500석 이상의 공연장, 1천명 이상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책정하여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및 안전관리 설비, 보호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건설업 외에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매겨져 있지 않은데, 의미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공연장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공연장 안전 확충을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

공연법에서는 안전교육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4(안전교육)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교육은 주로 안전책임자 교육에 해당하고,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동자의 권리로 교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산재보상에 대한 내용,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권리 등의 교육은 누락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동자 교육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면 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공연예술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연예술에 특화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을 정비하고, 법적 의무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의 안전관리조직으로,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만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보건관리체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

자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대부분의 공연장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산안법 상 안전보건체계 및 공연법 상의 안전관리조직에서 모두 배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안법 상 안전보건체계가 소규모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장기적 과제와 함께,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공연법 사각지대 줄이기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형태로, 지역별로 소규모 공연장들의 안전, 보건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공연의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을.

이번 사건의 공연에는 김천시-김천시예술문화회관과 호남오페라단 뿐 아니라, 돈을 지원하고 행사를 공동주최, 주관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회관연합회도 관여돼 있다.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내용과 공연팀 선정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므로, 이런 공공기관들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확한 비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설업의 발주자-도급인-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특히 그 원인이 발주자-도급인-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관계 및 안전보건 책임의 형해화에 있다고 보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사비 아끼기 위해 위험한 작업이 강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사정이 있어 공사 기간이 연장돼야만 할 때,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공법과 공사기간 등을 통해 노동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발주자 책임은 현재는 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제조업 등에 비해, 건설업에서는 발주자가 공법이나 공사기간 등을 통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화재참사에서 보듯이, 발주처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면 현장에서는 위험이 높아진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역시, 발주처의 위험한 공법 도입이 사고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유사한 관계가 예술계에서도 보인다. 방송사 - 방송 제작사 - 방송노동자 관계에서도 유사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바쁜 방송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촬영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현재는 방송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제작사와 노동자 사이에서 문제가 처리된다.

‘방송 핑크넬 수는 없잖아’ 하는 압박과 관행 속에 방송 노동자만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공연이 꼭 상연돼야 할 기간을 정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연을 할지 결정하는 공공기관들에게도, 건설현장에만 적용되던 발주자 책임을 적용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각 공연장의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여, 적격하다고 생각될 때 선정하도록 한다든지⁸⁾, 안전상의 문제로 공연을 약속한 기한 내에 상연하지 못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연기. 연장하도록 수용한다는 조건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단순히 지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도 많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 문화예술계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올해 새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뜨거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문화예술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공연장이나 공연예술계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니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 이번 김천 사건에서 무대감독만 처벌받은 것처럼, 꼬리자르기가 가능하면, 기업과 최고경영자는 안전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동기가 없다. 그들에게 안전 조치를 하고,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발주처에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때,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한국 법체계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노동자가 법을 위반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기업에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의 조직문화에 따라 부지

8)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적격 수급인 개념 차용

불식간에, 관행대로 행동하여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늘 안전펜스 없이 일해 왔기 때문에, 늘 무대를 점검할 때 무대 위에서 다른 작업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다 사고가 나는 식이다. 따라서 지금 제안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자 했다.

3. 나가며

이번 사건이 연극계, 무대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일하는 사람이 모두 다 놓여 있는 ‘한국 사회 노동안전보건 문제’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의 제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중 더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과 형태로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나갈지, 어떤 제도가 문화예술계에서 효과적일지, 특히 이를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함께’ 일구어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기 바란다. 이런 중요한 고민점을 던져 준 **故박송희**님과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이후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사고 예방과 안전의 책임을 예술인에게 떠넘기게 하거나, 허울만 좋은 정부나 정치권의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